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393 취·등록세 반환청구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3. 15.
판 결 선 고	2019. 4.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1) 다만,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한 증여원인무효에 따라 발생했던 취·등록세의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로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을 특정한 점,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원고는 2018. 9. 11.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동생들이 납부한 취·등록세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한 환급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을 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회신 내용을 통지받은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원인에도 '원고의 수차례 방문과 탄원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반환의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피고의 환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4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B은 2008. 6. 17. 그 자녀들인 원고와 원고의 동생들(이하 원고와 원고의 동생들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등은 위 이전등기를 하면서 2008. 6. 17. 등록세 13,680,000원, 2008. 12. 29. 취득세 16,995,880원(가산세 포함) 및 그에 대한 가산금 917,750원 합계 17,913,63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C 등이 B과 원고 등을 상대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2. 10. 'B과 원고 등의 증여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에 기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16119호)이 선고되었다.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8.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납부한 취·등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등록세는 공부에 등기하는 행위에 대한 행위세이므로, 등기 당시 적법하게 등기된 이상 향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후 법원에서 법률상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4

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원인무효의 확정판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으나, 원고 등의 경우 2012. 2. 10.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환급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을 해주었으며(이하 위와 같은 회신을 편의상 '이 사건 취·등록세 환급거부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취·등록세 환급거부 결정 통지서는 2018. 9.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판단 - 직권

가.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60조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지방세환급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지방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지방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8. 9. 17. 원고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4

환급신청을 이 사건 취·등록세 환급거부 결정의 방식을 통하여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가지는 지방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14

[별지]

부동산

[redacted]구 D 대 546㎡ 및 지상 연와조 경사스라브위 세멘기와 2층 주택

1층 153.50㎡

2층 76.95㎡

지층 93.64㎡